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3659
----------	------

제안년월일 : 2026년 4월 22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박성연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72호), 문성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09호)을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2026.4.22.)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박성연 의원 외 12명, 문성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교

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하고,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특별교통수단의 전용대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증진하고자 하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운영과 운행 서비스에 대해 연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나.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다.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배치와 운행인력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전용대기공간을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과 운행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실시에 따른 결과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배차와 운행인력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전용대기공간으로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